

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2. 5. 9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5. 9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01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10.21)상정,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여철 기획감사실장)

### 가 제안이유

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區의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~제4조)
-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하며 전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게시하도록 함 (안 제5조 및 제6조)
-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,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상업성 광고, 욕설, 음란물등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)
-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

규정함. (제9조~제12조)

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 장과의 대화방과 주민참여마당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.

(안 제13조~제14조)

- 지역정보화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5조~제16조)
- 국제협력, 교류, 관광유치, 통상정보등의 제공을 위하여 국외 에도 구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도 병행 설치·운영하도록 함. (안 제17조)
-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자료 보안관리 및 시스템의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요령등을 규정함. (안 제18조~제20조)

### 3. 관련법령

-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의2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(정의)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(정의) 및 제4조(민원의 신청등), 제10조(처리결과의 통지)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 (정보의 삭제요청등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관내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
- 홈페이지 게시물관리, 개인정보보호등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제정하였으나

-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중 “수시로 점검, 갱신하여야 하며” 는 “수시로 점검, 변경하여야 하며” 로 수정하고
- 조례안 제13조제2항 내용중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되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제2항 “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” 를 “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붙임: 수정안 대비표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(생략) ②-----수시로 점검, <u>갱신</u> 하여야 하며-----	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(제정안 1호와 같음) ②-----수시로 점검, <u>변경</u> 하여야 하며 -----